

함양군,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

✎ 정상목 기자 | ☎ 승인 2024.04.04 10:07

| 기존 '경영이양 직불제'를 확대·개편, 고령농업인(65세~79세) 대상 최대 10년간 지급



「농지이양은퇴직불」이란?



고령농업인은 농지를 이양하고
보조금 수령



청년농업인은
농지 확보

농지이양은퇴직불은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 개편한 사업입니다.

함양군은 농식품부에서 신규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기존 '경영이양 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한하여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함양지소(055-940-5571)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 또는 농지은행누리집(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상목 기자 mogsang113@hanmail.net